

도서관법 개정 법안 조항별 설명자료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의 설치·운영과 봉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정보의 제공 및 유통의 효율화와 국민의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29조 및 사회교육법의 정신에 따라 국민의 평생교육 및 민족문화 창달을 위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현대적 의미의 도서관 개념으로 재정립하고 도서관의 사회적 성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p>	<p>◇ 현행법은 법제정 후 4반세기가 지났으므로 그 용어 사용에 있어서 진부할 뿐만 아니라 본법 제정의 목적이 명료히 표현되지 않고 있음.</p>	<p>◇ 일본: 도서관법 1967. 8. 1 법률 제120호 제1조: 이 법률은 사회교육법(1949년 법률 제207호)의 정신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교육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관 자료를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여 공중 또

는 특정인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조사·연구·학습·교양 등 평생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도서관이 정보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한 포괄적인 봉사를 추진하기 위하여는 분석과 축적기능을 포함한 정보의 공급원으로서 도서관의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하며 도서관활동이 각 분야에 실질적으로 확대되어져야 함.</p>	<p>◇ 현행법은 도서관의 목적을 주로 도서자료의 수집·보존·이용에의 봉사로 한정하고 있음으로 현대적 의미의 도서관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음.</p>	<p>◇ 일본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도서관이라 함은 도서·기록·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보존하여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해서 그 교양 조사연구 레크레이션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써 지방공공단체 일본 적십자사 또는 민법(1894년 법률 제89호) 제34조의 법인이 설치하는 것(학교에 부속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실을 제외한다)을 말한다.</p>

2.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하는 도서·기록·소책자·연속간행물·악보·지도·사진·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마이크로 형태물·테이프 등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 행정자료, 향토자료 기타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각 분야에 도서관 활용을 확산시키고, 정보화시대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도서</p>	<p>◇ 현행법은 도서관자료의 개념을 도서·기록·시청각자료·국가 및 지방행정자</p>	<p>◇ 독일 제3조(출판물의 개념) ① 이 법에서 출판물이</p>

취 지	현 황	의 국 예
<p>관자료 개념에 인쇄자료는 물론 영화필름·슬라이드·음반·마이크로 형태자료·테이프 등 시청각자료 및 전산화 자료 등 각종 정보 매체자료들이 포함되어야 함.</p>	<p>료·향토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 등으로 제한 규정하고 있음.</p>	<p>라 함은 복제과정에 의하여 제작되며 보급의 목적을 가지는 활자·형상 및 음에 의한 모든 표현수단을 말한다.</p> <p>② 다음 각호에 제작품은 출판물에 관한 이법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영화·음상화 및 환등화 2. 법령으로 제정된 자에 대해서만 보급되는 업무보고서 3. 전적으로 영업상의 목적, 업무상의 목적, 기업내부의 목적, 거래목적 또는 가정생활이나 사교생활에 사용되는 문서

3.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교양·조사·연구 및 교육·문화활동을 증진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4. “대학도서관”이라 함은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대학·사범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관에서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5. “학교도서관”이라 함은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에서 교원과 학생의 교수·학습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실을 말한다.
6.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기관·단체의 소속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7. “ 특수도서관”이라 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가 그 소속원이나 신체장애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학습· 교양· 조사 및 연구 등을 위한 도서관봉사를 제공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각종 도서관은 설립목적과 그 기능이 각기 다르며 봉사대상자 및 범위 등이 상이함으로 이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각 도서관 상호간의 역할 분담을 확실하고 각종 도서관의 본법 적용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음.</p>	<p>◇ 현행 법에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p>	

제 3조(도서관의 종류) 도서관은 그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립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그 설립목적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그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상 상이함으로 구분되어야 하며, 또한 대학도서관도 학교도서관과 설립목적상 다르므로 구분되어야 함이 타당함.</p>	<p>◇ 현행법은 도서관을 설립자에 따라 국립도서관· 공공도서관· 사립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설립목적에 따라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특수도서관으로 구분하고 있음. ◇대학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이 구분되어 있지 않음.</p>	

제 4 조(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 대한 적용배제)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 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취 지	현 황	의 국 예
<p>◇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은 설립주체 및 소속부서의 다양성, 목적의 특수성 등으로 도서관법의 일반적 규정을 적용하기에는 난점이 있음.</p>	<p>◇ 현행법 제4조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수도서관과 그 설립자에 대하여 본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음.</p>	<p>◇ 일본 등 분할법체제를 갖고 있는 국가의 입법례를 보면 전문·특수도서관에 관한 국가의 법규정이 없고 이를 각 소속기관의 규약 등에 포함시키고 있음.</p>

제 5 조(대학도서관 등의 이용제공) ①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그 설립목적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② 대학도서관·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은 당해도서관의 특성에 맞는 사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취 지	현 황	의 국 예
<p>◇ 도서관의 본질은 인류사회의 목적달성에 기여하는데 있음으로 국민이 널리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보편주의는 도서관 특성의 하나임. ◇ 따라서 각 도서관은 운영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널리 공개시킴으로서 도서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함.</p>	<p>◇ 현행법(제27조)에는 학교도서관에 대한 공개 규정만 있음.</p>	<p>◇ 민주국가에서는 모두 일반 공개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 일본: 학교도서관법 제4조 제1항 학교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일반 공중에게 이용시킬 수 있다.</p>

제 6 조(도서관의 시설·자료) ① 도서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도서관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직원, 시설, 자료는 도서관구성과 봉사의 핵심이 되는 요소로써 이에 대한 내용을 모법에 규정함은 당연한 것이며, 다만, 사회의 변천발전예 따라 도서관의 요소가 시의 적절히 보완 수정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고자 함.</p> <p>◇ 본법은 우리나라 전체도서관의 균형된 육성과 발전을 도모키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국가시책의 하나로서 이를 구현키 위해서는 각종 도서관에 대한 시설, 자료에 관한 내용이 통합체계로 규정되어져야 할 것임.</p>	<p>◇ 현행법 제5조 제3항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시설기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p>	<p>◇ 일본 제18조(공립도서관의 기준) 문부대신은 도서관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립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상 바람직한 기준을 정하고 이것을 교육위원회에 제시함과 동시에 일반공중에 대하여 알리는 것으로 한다.</p> <p>◇ 중화민국 제27조 도서관 설비기준은 따로 이를 정한다.</p>

제 7 조(사서직원 등) ① 도서관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사서교사 또는 실기교사(사서)를 두어야 하며, 사회교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교육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은 1급정사서·2급정사서 및 준사서로 구분하며 그 자격요건과 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도서관운영과 봉사의 전문적인 업무내용은 각자의 교육정도, 실무경험, 훈련 등을 통하여서만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추 수 있으므로 자격구분을 명확히 규정하여 업무수행의 적합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임.</p> <p>◇ 정사서의 경우 1, 2급으로 등급하여 자격기준을 달리 정해야 함은 전문직의 특성에 따라 경력 및 학력에 상응하는 등급구분이 요청되기 때문이며 이는 사서직의 사기양양과 자질향상은 물론 유능한 사서전문요원의 확보를 하기 위한 것임.</p> <p>◇ 도서관에 사회교육전문요원을 두어 사회교육활동을 활발히 전개토록 함.</p>	<p>◇ 현행법(제6조)은 사서직원의 배치기준만 규정하고 있으며 자격구분에 대한 규정은 제외되어 있음.</p>	<p>◇ 일본</p> <p>제4조(사서 및 사서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에 두는 전문직원을 사서와 사서보라고 칭한다. 2. 사서는 도서관의 전문적 사무에 종사한다. 3. 사서보는 사서의 직무를 보조한다.

제 8 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① 각종 도서관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 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상실 또는 오손된 자료를 폐기 혹은 제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 도서관자료는 도서관 재	◇ 주로 지식생산과 정보입	◇ 외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산으로서 가치보다 널리 이용되는 지적물품이므로 망실·훼손·파손과 일부 자료의 가치성 상실은 당연한 것이며 이러한 자료들을 적절히 폐기, 제적하여 자료의 신진대사와 최신성을 유지함으로써 도서관기능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이의 명문화가 필요함.</p>	<p>수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도서관자료는 소모품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영구보존해야 할 비품으로 취급되어 물품관리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 자율관리와 봉사업무가 경직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p>	<p>시행세칙이나 각 도서관 내규에 규정하여 일정량(연간 전장서량의 0.3%~0.6%이내)의 폐기를 인정하고 있음.</p>

제 9 조(도서관발전위원회) ① 도서관의 균형있는 발전과 도서관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중요시책의 수립 등에 관하여 문교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도서관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직무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국가적 차원의 문헌정보 관리는 그 기능과 성격상 정부 각 부처 또는 각종 도서관간에 상호 관련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가 부족하면 효율성이 저하됨으로 전국 도서관의 균형된 육성을 필요로 하며, 이에 원활한 정책수행을 도모하고자 문교부장관 직속으로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가 요망됨.</p>	<p>◇ 현행법에서는 이를 제외시키고 있으므로 인하여 근본적으로 도서관 육성에 대한 국가의지가 결여된 상태임.</p>	<p>◇ 미국은 대통령자문기관으로 "도서관 및 정보과학위원회"를 설치하여 도서관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 육성책을 국가의 기간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음.</p> <p>◇ 영국은 수상직속하에 "도서관발전자문위원회"와 산하 각종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p> <p>◇ 일본은 문부대신 자문기관인 학술심의회내에 학술·정보분과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p>

제10조(도서관진흥기금) ① 정부는 도서관의 설립·시설·운영 기타 도서관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서관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은 문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기금조성계획
2. 기금운용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문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조세감면) ① 법인·단체 및 개인은 도서관의 설립·시설·자료 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의하여 도서관에 기부한 금전 기타 재산에 관하여는 조세감면 규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계산의 특례를 적용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개인이나 기업이익의 사회환원 또는 도서관 육성에 대한 민간주도를 적극 유도하는 실질적인 한 장치로서 조세감면의 혜택을 부여하고자 함.</p>	<p>◇ 개인 또는 단체 등이 도서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여도 각종 조세에 관련되어 도서관 육성의 민간인 참여가 극히 부진함.</p>	<p>◇ 미국 등 선진제국에서는 개인 또는 단체가 도서관을 설립 운영할 경우 도서관을 교육 및 사회복지시설로 인정하여 완전 면세조치해 주고 있음.</p>

제13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도서관이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도서관은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며 국민에게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되는 사회복지시설임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사시설과는 엄격히 구별되며 이들이 도서관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악용되는 사례를 배제하기 위한 것임.</p>	<p>◇ 현행법(제24조)에 규정하고 있음.</p>	<p>◇ 일본:제29조 도서관과 동종의 시설을 어떤 사람이라도 이를 설치할 수 있다.</p>

제14조(도서관협회) ① 도서관의 설립자는 도서관 상호간의 정보자료교환 및 업무협조, 도서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연구, 국제도서관단체와의 상호협력, 기타 도서관직원의 자질향상 및 공동이익증진을 위하여 도서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도서관협회는 도서관운영 기법의 개발, 사서직의 행동강령의 추진 등 구체적인 전문적인 도서관사업을 실질적 추진하는 기능을 갖는 전문적 단체임으로 협</p>	<p>◇ 현행법(제13조)에 규정하고 있음.</p>	<p>◇ 미국, 영국, 일본 등의 도서관협회는 그 나라 도서관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을 중요시하여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음.</p>

취 지	현 황	외 국 예
회의 효율적 운영과 육성을 통하여 전체도서관 발전을 모색하고자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어 육성하고자 함.		

제 2 장 국립중앙도서관

제15조(국립중앙도서관) ① 문교부장관 소속하에 국립중앙도서관을 둔다.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관을 둘 수 있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 국내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의 위치를 제도적으로 확고히 해줌으로써 도서관 상호간의 기능활성화를 위한 각종 협조를 증대시킬 수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의 증점적 육성을 통하여 전체 도서관발전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본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에서는 제2장 공공도서관규정중 제2절에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중앙도서관의 성격을 확실히 부여치 않고 있으므로 인하여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음.	◇ 독일:제1조 독일도서관의 설립 독일도서관(die Deutsche Bibliothek)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중앙도서관(die Zentrale Archivbibliothek)이다. 독일도서관은 권리능력을 가지는 공법상의 연방직속기관으로서 Frankfurt am Main에 설치한다.

제16조(업무) ① 국립중앙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이용의 이용
2. 다른 도서관과의 정보자료의 유통
3. 각종 서지의 작성 및 표준화와 국제표준자료번호제도의 운영
4. 전산화를 통한 국가문헌정보체계 및 도서관정보협력망의 통괄
5. 외국도서관과의 협력 및 자료의 국제교류
6. 다른 도서관에 대한 업무 및 사회교육활동의 지도·지원

- 7. 도서관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 8. 사서직원의 연수
- 9. 기타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 ② 국립중앙도서관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제20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도서관과 상호 협력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본질적 추진업무 내용과 타 도서관과의 업무상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음.	◇ 현행법(제17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의 고유업무내용을 완전하게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어 기능상 타도서관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대 표도서관의 성격을 결정짓는 업무내용과 그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제17조(자료의 제공 및 납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연속간행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도서·연속간행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③ 국립중앙도서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본을 한 자에게 그 자료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납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납본의 절차·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국제표준자료번호) ①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서 또는 연속간행물에 대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국제표준자료번호(이하 "자료번호"라 한다)를 부여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번호의 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국립중앙도서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의 하나는 국가문헌관리와 그 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납본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문헌정보정책의 실효를 거둘 수 있다.</p> <p>◇ 한편, 국가문헌관리의 효율화와 이용의 극대화를 위하여 국내문헌에 대한 표준화작업의 일환으로 자료번호 부여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하는바, 이에 대한 강력하고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p>	<p>◇ 현행법(제12조)에는 자료의 제공에 대한 규정만 있고 자료번호부여에 대한 규정은 없음.</p> <p>◇ 또한 납본에 대한 규정도 극히 제한적이고 미온적이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여 망라적 국가문헌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음.</p>	<p>◇ 일본: 도서관법 제9조(공공출판물의 수집)</p> <p>◇ 독일: 도서관설치법 제18조(납본의무의 근거) 제19조(납본의무자) 제20조(제출절차) 제21조(제출된 출판물의 도서목록) 제22조(보상) 등</p> <p>◇ 대다수의 외국에서는 위와같이 납본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법규로 규정하고 있음.</p>

제 3 장 공공도서관

제19조(설립) 국가·지방자치단체·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공·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자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정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아울러, 사회의 공공시설로서의 유지와 관리를 도모코자 함.</p>	<p>◇ 현행법(제14조)에 규정함.</p>	

제20조(업무) 공공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공중에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사회교육 및 문화활동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교류
5. 도서관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6. 기타 도서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공공도서관은 공중에의 도서관 봉사와 아울러 각종 사회·교육활동 및 향토문화의 전승 발전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이에 필요한 업무수행의 주요내용을 규정하여 발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p>	<p>◇ 현행법(제15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고유기능을 수행할 업무내용의 일부가 누락되어 있음.</p>	<p>◇ 일본:제3조(도서관의 봉사) 도서관은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지방의 사정 및 일반공중의 희망에 따르고 더우기 학교교육을 원조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대략 다음의 각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실시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p> <p>(1) 향토자료·지방행정자료·미술품·레코드·필름의 수집에도 충분히 유의해서 도서, 기록, 시청각교육의 자료, 기타 필요한 자료(이하 도서관자료라 한다)를 수집하여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할 것.</p> <p>(2) 도서관 자료의 분류배열을 적절하게 하고 또 그 목록을 정리할 것.</p> <p>(3) 도서관의 직원이 도서관자료에 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며 그 이</p>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용을 위한 상담에 응할 수 있게 할 것.</p> <p>(4) 다른 도서관, 국립국회도서관, 지방공공단체의 의회에 부설하는 도서관 및 학교에 부설하는 도서관 또는 도서관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협력하고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체를 행할 것.</p> <p>(5) 분관, 열람소, 대본소 등을 설치하고 또 자동차문고, 대출문고의 순회를 행할 것.</p> <p>(6) 독서회, 연구회, 감상회, 영상회, 자료전시회 등을 주최하고도 그 장려를 행할 것.</p> <p>(7) 시사에 관한 정보 및 참고자료를 소개하고 또 제공할 것.</p> <p>(8) 학교, 박물관, 공민관, 연구소 등과 긴밀하게 연락하여 협력할 것.</p>

제21조(공공도서관의 설치·육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와 교육과 문화발전을 위하여 공공도서관을 설치·육성하여야 한다.

② 공공도서관에는 어린이·노인·신체장애자 등을 위한 도서관봉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 대한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 또는 이동도서관을 둘 수 있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공공도서관은 중요한 사회복지시설로서 모든 국민이 이용하며 혜택을 받을 권리를 갖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이를 발전시켜 국민복지에 적극 동참이 타당하다. 이러한 본질적인 차원에서 공공도서관의 설치업무화규정은 당연한 것임.</p> <p>◇ 따라서 현행법의 소극적이고 권고적인 규정으로서 현실적으로 공공도서관의 육성이 불가능함으로 설치의무화규정으로 강화하여 절대 부족한 공공도서관의 증설과 발전을 도모코자함.</p>	<p>◇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설치를 임의 규정으로 하고 있어 도서관 설치에 소극적임.</p> <p>◇ 현재 전국 238개 시·군·구 중 공공도서관이 1개관도 없는 시·군·구가 75개 지역에 달함.</p> <p>('87. 4 현재)</p>	<p>◇ 중화민국:도서관법 제2조 각성(행정원 직할시 이하도 이에 준한다)은 최소한 성에 각각 한개의 도서관을 설치하고 각 현(보통시 이하는 이에 준한다)은 공공(민중) 교육관내에 반드시 도서관을 부설하고 인구가 많고 경제가 윤택한 지역은 단독으로 현립 도서관을 설립한다.</p>

제22조(공립공공도서관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하 "공립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의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이를 부담한다.

② 국가는 공공도서관을 설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도서관의 시설·자료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공립 공공도서관 운영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의무화하며, 소요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토록 하는 등 공공도서관 운</p>	<p>◇ 현행법(제19조)에는 재원확보에 대한 규정이 분명치 않으며 또한 국고보조에 대한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국고보조가 영세</p>	<p>◇ 덴마크:제1장 이와같은 공공도서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단체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p>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영비 재원확보를 확고히 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운영의 활성화와 실질적인 육성책을 마련코자 함.</p>	<p>한 상태임.</p>	<p>제3장 제1조 본 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공공도서관은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수입과 그 지방의 보조금과 함께 자치단체의 충분한 보조를 받아야 한다.</p>

<p>제23조(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운영위원회) ① 공립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 또는 행정직으로 보한다. ② 공립공공도서관의 설립자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둔다. ③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도서관운영의 전문성을 높여 현대 정보화사회에 부응하는 도서관운영을 도모키 위해, 공립 공공도서관장의 보임을 복수직으로 하되 전문직 우선으로 규정코자 함. ◇ 공공도서관 설치지역마다 자문기구로서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공공도서관 사업을 지역문화사업의 일환으로 확산 발전시켜 나가코자 함.</p>	<p>◇ 현대의 도서관은 전문직에 의한 운영이 필수적이나, 현재 전국 공립 공공도서관장의 95%이상이 일반행정직으로 보하여져 있음.</p>	<p>◇ 일본:제13조 1. 공립도서관의 관장 및 당해 도서관을 설치하는 지방공공단체의 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직원, 사무직원 및 기술직원을 둔다. 2. 관장은 관무를 장리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여 도서관 봉사의 기능달성에 힘써야 한다. 3. 국가로부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p>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교부를 받는 지방공공 단체가 설치하는 공립 도서관의 관장이 되는 자는 사서의 자격을 가진 자라야 한다. 단, 해당 도서관의 관장으로 되는 자 중 도·도·부·현 또는 지방자치법(1947년 법률 제67호) 제252조의 19 제1항의 지정 도시(이하 지정도시라 한다)가 설치하는 도서관의 관장으로 되는 자 및 지정도시 이외의 시가 설치하는 도서관의 관장으로 되는 자는 그 위에 각각 3년 이상 또는 1년 이상 도서관의 관장 또는 사서(국립 국회도서관장 또는 대학 아니면 고등전문학교의 부속도서관의 직원으로서 이들 직원에 상당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근무한 경험을 갖춘 자라야 한다.</p> <p>◇ 자유중국:제12조</p> <p>성립도서관장은 반드시 인격이 있는 자로서 고매한 학식을 가진 준재여야 하며 다음의 자격 하나를 구유해야 한다.</p> <p>1. 도서관전문학교 혹은 도서관전수과를 졸업한</p>

취 지	현 화	외 국 예
		자로서 도서관 직무에 1년 이상 근무한 성적이 우수한 자. 2. 사범대학·교육대학 혹은 교육과를 졸업한 자로서 도서관직무에 2년 이상 근무한 성적이 우수한 자. 3. 대학 혹은 기타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도서관 전문훈련을 받은 자로서 도서관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성적이 우수한 자. 4. 학문에 특수한 공헌을 이룬 자로서 도서관학에 대하여 평소 연구한 자.

제24조(법인 등이 설립한 공공도서관의 등록)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군교육장(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교육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25조(사립공공도서관의 지도·감독 등) ① 시·군교육장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공도서관(이하 “사립공공도서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균형있는 도서관발전과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군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시정명령) 시·군교육장은 사립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그 시설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설립목적에 위

반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정관명령) 시·군교육장은 사립공공도서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설립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관을 명할 수 있다.

1. 제6조에 규정된 시설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때
2.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취 지	현 황	외 국 예
◇ 운영이 부실하거나 도서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립공공도서관을 규제하기 위함.	◇ 현행법(제10조, 제22조)에 규정됨.	

제28조(사립공공도서관의 폐관신고) ① 사립공공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군교육장에게 폐관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시·군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도서관에 관한 등록을 말소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 사립공공도서관의 폐관 후의 사후처리를 합리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현행법(제11조)에 규정됨.	◇ 일본: 제12조 都·道·府·縣의 교육위원회는 문부대신의 요구에 응해서 이에 대하여 당해 都·道·府·縣 및 당해 都·道·府·縣 내의 市·町·村에 설치하는 도서관의 설치 폐지 및 설치자의 변경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사립공공도서관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립 공공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사립공공도서관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필요한 경우 운영비를 보조하는 것이 타당함.</p>	<p>◇ 현행법(제19조)에 규정됨.</p>	

제30조(사용료·입관료)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립 공공도서관의 입관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도서관 입관료와 사용료 개념을 구분하여, 특정시설 및 자료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되, 국립공공도서관의 입관료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도록 함.</p>	<p>◇ 현행법(제8조)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된 바, 이를 입관료 개념으로 받아들여 국립의 공공도서관에서 징수하는 사례가 있음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임.</p>	<p>◇ 일본:제17조 공공서관은 입관료 기타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어떠한 대가라도 징수해서는 안된다. 제28조 사립도서관은 입관료 기타 도서관 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p> <p>◇ 덴마크:제2장1조 4. 도서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무료로 책을 대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모든 시립도서관에서는 참고자료가 있는 무료</p>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다. 도서관장이나 공공도서관의 국가심의회의 권고에 따라 문교부장관은 지방관계기관으로부터 보다 상세한 보고를 얻은 후에 지방도서관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p>

제31조(자료의 제공) 지방자치단체가 도서·연속간행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때에는 그 발행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자료 2부를 관할지역 안에 있는 공공도서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지방자치단체 발간자료를 당해지역 공공도서관에 보존, 활용시킴은 물론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정신을 구현하고자 함.</p>	<p>◇ 현행법(제12조)에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대한 납본규정이 있을 뿐 지역공공도서관에 대한 납입규정이 없음. ◇ 따라서 공공도서관자료의 충실화와 기능 발휘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p>	<p>◇ 일본: 제9조(공공출판물의 수집) 정부는 都·道·府·縣이 설치하는 도서관에 대하여 관보 기타 일반공중에 대한 공보용으로 제공되는 인쇄국 발행의 간행물을 2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기관은 국립도서관의 요구에 응해서 이것에 대하여 각각 발행하는 간행물 기타 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p>

제 4 장 대학도서관

제32조(설치) 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는 대학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 대학도서관에 대한 설치 근거조항과 기타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대학도서관 발전의 기초를 마련함과 동시에 타 관종과의 개념구분 및 상호협력의 효율화를 도모키 위한 것임.	◇ 현행법(제25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초·중·고등학교 도서관설치 규정과 통합적으로 되어 있으며 대학도서관 특성에 맞는 필요사항의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제33조(업무) 대학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와 학생의 연구 및 교육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
2. 효율적 교육과정의 수행을 위한 지원
3. 도서관이용의 체계적 지도
4.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과 정보망을 통한 정보자료의 유통
5. 기타 대학도서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취 지	현 황	외 국 예
◇ 대학도서관의 주요기능을 규정하여 그 목적을 명확히 함으로써 봉사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타관종의 도서관과 관계정립을 분명히 함으로써 전체 도서관 발전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음.	◇ 현행법에는 누락되어 있음. ◇ 대학설치시설 기준령에 규정되어 있어서 타관종과의 협력 및 연결성을 유지하기 어려움.	

제34조(지도·감독) 대학도서관은 교육법과 사립학교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당해 대학 또는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 대학도서관은 그 설립주체 또는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타당함.	◇ 현행법(제9조)에 규정함.	

제 5 장 학교도서관

제35조(설치)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에는 학교도서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 학교도서관은 필수불가결한 핵심적인 학교내의 교육시설이므로 학교교육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 육성 발전시켜야 하며. ◇ 학교도서관의 활성화 도모는 청소년 문제와 공공도서관 봉사의 정당화를 위하여서도 절실한 것이므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임.	◇ 현행법(제3장)에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도서관과 통합적으로 되어 있고 필요한 사항은 누락되어 있으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일본은 학교도서관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학교도서관법”을 독립법으로 제정하고 있음.

제36조(업무) 학교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교육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및 그 이용

- 2. 독서지도 및 도서관 이용의 지도
- 3. 시청각자료의 개발제작 및 이용
- 4. 기타 학교도서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업무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학교도서관의 주요기능을 명문화하여 그 활동을 명확히 함으로써 학교교육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타관종과의 관계정립을 분명히 하여 전체 도서관 발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p>	<p>◇ 현행법에는 물론 교육법 등 기타 관계법규에도 전혀 규정이 없음.</p>	<p>◇ 일본: 학교도서관법 제4조 1. 학교는 대략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학교도서관을 아동 혹은 생도 및 교원의 이용에 제공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서관자료를 수집하여 아동 혹은 생도 및 교원의 이용에 제공할 것. (2) 도서관 자료의 분류배열을 적절하게 하여 목록을 정비할 것. (3) 독서회·연구회·감상회·영사회·자료전시회 등을 행할 것. (4) 도서관 자료의 이용 기타 학교도서관 이용에 관하여 아동 혹은 생도에 대하여 지도할 것. (5) 타학교의 학교도서관, 도서관, 박물관, 공민관 등과 긴밀히 연락하고 협력할 것.

제37조(지도·감독) 학교도서관은 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당해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 설립주최 지도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아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 현행법(제9조)에 규정됨.	

제 6 장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제38조(설립 등)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특정분야별로 전문적인 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특정분야별 자료확보 및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대학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중에서 지정하여 전문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공중이나 신체장애자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군교육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 정보산업사회에 처하여 전문 및 특수도서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음으로 이에 대한 육성책 마련이 필요하며 타관종과의 협력체제를 위하여 본법에 최소한의 필요사항을 규정코자 함.	◇ 현행법(제4조)에는 법적용 배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	

제39조(지도·감독 등) ① 시·군교육장은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균형있는 도서관발전과 도서관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군교육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교부장관은 전문도서관과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도서관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 전문·특수도서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 또는 감독청의 지도·감독 기능의 법제화가 필요함.	◇ 현행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음.	

제40조(준용) 제7조 제1항의 규정은 전문도서관 및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제26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은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문도서관 또는 특수도서관에 대하여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 7 장 도서관정보협력망

제41조(도서관정보협력망 구성) ① 정부는 정보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도서관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각종 도서관의 상호협력력을 도모하기 위한 연계체제로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정보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1. 전산화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서지편찬·정보처리·봉사활동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분담수서·상호대체·종합목록·인쇄카드제도 등 도서관운영의 효율화
4. 기타 도서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② 협력망은 각종 도서관으로 구성하고 협력망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을 위하여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두되, 중앙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 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현대도서관봉사의 극대화 및 전산화체제에 대비하고 기능의 활성화등을 위한 전국적인 상호간의 협력망 구성이 시급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하여 본 규정이 필요함.</p>	<p>◇ 현행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음.</p>	

제42조(중앙관의 업무) 협력망의 중앙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력망의 각급 지역대표관의 지정 도는 변경
2. 협력망의 기능수행에 관한 기획·조정 및 지도
3. 협력망 운영의 통할

취 지	현 황	외 국 예
<p>◇ 협력망 업무의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를 통괄 조정하는 중앙관의 지정과 그 업무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p>	<p>◇ 현행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음.</p>	

제43조(지역대표관) ① 지역대표관은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에 두되, 공공도서관 중에서 중앙관이 이를 지정한다.

② 제1항의 지역대표관은 중앙관의 지도 및 조정을 받아 산하 지역협력망의 운영을 통할하고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구(서울특별시·직할시의 구에 한한다)에 지방대표관을 둘 수 있다.

제44조(지원·협력) 협력망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각종 도서관의 설립자는 당해 도서관에 필요한 시설·채제 등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각종 도서관은 중앙관 및 지역대표관의 지도에 따라 다른 도서관과 상호협력하여야 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 도서관·정보협력망의 운영은 각 도서관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을 기초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를 위하여 명문화 규정이 필요함.	◇ 현행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음.	

제45조(협력망의 운영) 협력망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 협력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직구조 내용을 명문화 할 필요성이 있음.	◇ 현행법에는 명문규정이 없음.	

제 8 장 별 칙

제46조(벌금) 제27조(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정관명령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 지	현 황	외 국 예
◇ 공공도서관통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이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적절한 벌과금 부과액을 명문화 해야 함.	◇ 현행법은 벌금부과액이 1만원으로 되어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제47조(과태료) ① 제24조 또는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서관을 개설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②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③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당해 자료정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④ 제3항의 자료가 비매자료인 경우에는 당해 발행자료원가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교부장관·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한다.
-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